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21일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6년 2월 1일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

나.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위탁운영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등에 상충되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규정 전면 개정 (안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명시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 조례에 명시 (안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환불기준 조례에 명시

○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 개선
(안 제15조, 18조)

-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거, 운영기관과 사용자 간 불평등한 손해
배상 규정 개선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민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위탁운영
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을 ‘구미시설공단,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청소년
단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사용료 반환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으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또한 별표3의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집행부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